

문서번호	교통지도과-5241
결재일자	2015.3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차단속담당	교통지도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부구청장	
주행진	이기영	나선호	곽병한	03/04 김병환	
협 조					

「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」

불법 주·정차 단속계획

2015. 3.

안전건설교통국
교통지도과

목 차

I. 현황 및 실태	1
II. '15 중점 추진방향	2
III. 세부 추진계획	4
IV. 단속절차	7
V. 단속방법	8
VI. 단속순서	10
VII. 단속반 편성·운영	11
VIII. 의견진술, 과태료 업무 등 처리기준	12
IX. 향후계획	14
X. 행정사항	15

불법 주·정차 단속계획

보행자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, 시민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단속 시행으로 선진교통질서 정착 및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I 현황 및 실태

■ 단속근거

- 도로교통법 제32조~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

■ 단속인력 및 장비

(2015년 1월말 현재)

인 력(단위:명)			장 비(단위:대)							비고
계	현장단속	CCTV 상황실 및 내근직	현장단속			무인단속시스템				
			차량	PDA	카메라	고정식 CCTV	운영 단말기	서버 모니터	PDP	
34	28	6	8 (cctv탑재2)	15	15	60	5	2	2	

■ 단속구간

- 서울시 : 주요 간선도로(왕복 6차로 이상) 위주 단속
- 자치구 : 진선 및 이면도로(왕복 6차로 미만) 위주 단속

■ 단속실적

(2014년도, 단위:건)

주 차 단 속						견 인		비고
계	성북구				서울시	계	불 법 주정차	
	계	인력	고정형 CCTV	탑재형 CCTV				
52,413	43,308	25,111	14,609	3,588	9,105	1086	1,086	※ 실 견인 건수 179건

■ 실태 및 문제점

- 일부구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·정차 상존
⇒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유발, 구급·구난 방해 등 사회적비용 발생
- 불법 주·정차에 대한 운전자의 준법정신 미흡
 - 근거리 주차습관, 주차위반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시민의식
 - 보도, 어린이·노약자 보호구역 등 불법주차 성행
- 단속의 형평성 및 일관성 미흡
 - 시·구도로, 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단속대상, 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 단속의 형평성, 일관성이 문제됨
- 생업차량, 전통시장 주변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완화 요청 많음.

II '15 중점추진방향

■ 보도 위 상시 집중 단속으로 보행환경 개선

- 보도상 불법 주·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집중 단속
- 온라인 시민신고제 활성화 및 대 시민 홍보 강화

■ 상습취약구간 선정,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시민 불편 해소

- 어린이보호구역, 교차로, 횡단보도, 정류장,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간 집중단속
- 불법 주·정차 상습취약구간(민원다발지역)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 관리

■ 소통과 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

- 전통시장 주변, 소형화물·택배차량, 장애인차량 등 계도위주 관리
- 소규모음식점 주변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 완화 및 계도 관리

■ 주택가 밀집지역(주택가, 전통시장 등)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

- 소방로 지정 도로(3개소) 및 전통시장 상시 순찰 모니터링

- 지역경제 활성화(전통시장)에 따른 단속완화와 소방로 확보를 위한 단속 강화의 정책간 충돌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

■ 단속의 형평성, 공정성 확보로 단속관련 민원 불만 최소화

-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, 시간대별 공통 단속 기준정립 (단, 우리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단속 기준 일부 반영)
- 서울시와 연계하여 단속공무원이 공통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단속시행

※ 지역별 단속 기준

단속구역별	지 정 구 역	단속기준
중점단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(서울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·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동소문로, 정릉로, 종암로, 화랑로, 한천로 ○ 견인 안전표지 및 CCTV 설치지역 ○ 주요 도로상으로 버스(마을버스 포함)노선 등 불법 주·정차로 인해 차량소통 장애 및 사고위험지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북로, 삼선교로, 보문로34길, 안암로, 보문로, 아리랑로, 보국문로, 북악산로, 인촌로, 삼양로, 인수로, 서경로, 솔샘로, 동소문로44길, 오패산로, 월계로, 장위로, 돌곶이로, 이문로 - 삼선교로16길, 개운사길, 보문로29길, 동소문로46길, 월곡로, 장월로, 화랑로32길 등 ○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·노인보호구역, 자전거 보행자 도로 등 ○ 상습적인 이열주차, 개구리주차 지역 등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 집중단속 실시 - 견인조치 병행
일반단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점 단속지역 외 지역의 불법주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순회단속 실시 - 교통소통 위주 단속 (필요시 견인조치)
특별단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장 주변, 보행전용거리 주변 등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특별단속이 필요한 지역 -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를 위해 단속이 필요한 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전 예방 계도 강화 - 단속 및 견인조치
단속완화지역 (탄력적 단속대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통시장 주변 - 화물조업(택배)차량 - 장애인차량(장애인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) -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대(11:30~14:0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도위주 관리 (단, 보도, 교차로, 버스정류장, 전용차로 등 중점단속구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속조치)

※ 시간대별 단속 기준

구 분	원 칙	예 외
평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07:00 ~ 22:00 - 출퇴근시간대 혼잡지역 집중단속 (07:30~09:00 / 17:30~20:00) -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심시간대(11:30~14:00) 및 심야시간대 (21:00~익일07:00)은 민원(계도)위주 단속 ○ 행사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특정구간과 시간대는 집중 단속 ○ 폭우, 폭설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 ※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
주말,공휴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09:00 ~ 18:00 - 민원신고 위주 계도 및 단속 	

■ 편리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대주민 계도·홍보

-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위, 어린이·노약자보호구역, 정류장 등의 불법 주·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 실시

III 세부 추진계획

■ 보도 위 불법 주·정차 지속적인 단속 강화

- 이면도로나 단속완화지역(전통시장, 점심시간대 등)이라 하더라도 보도 위는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단속
- 사유지나 공개용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단속조치
- '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보도 위 단속실적 반영

■ 상시 단속체계 강화

- 탑재형 차량CCTV(주행형), 고정식CCTV를 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

- 중점단속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강화로 민원 불편 해소
-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 후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견인 조치
- 불법주차 상습구간에 계도용 플래카드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시민 홍보

■ 이륜차 보도 위 불법주행 등 단속 - 경찰청 협조

- 이륜차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협조 요청
 - ※ 오토바이 불법주행(범칙금 4만원), 불법 주·정차(범칙금 3만원)

■ 중점 단속지역 단속 강화

- 중점 단속 대상 - 민원다발지역 및 특별관리구역
 - 상습적인 불법 주·정차로 교통 혼잡 유발 및 시민 불편이 큰 곳
 - 교차로, 횡단보도, 버스정류장 등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·정차 절대금지 구간
 - 어린이·노인보호구역, 자전거도로, 버스전용차로
 - 이열주차, 대각선주차, 번호판 가린 암체차량 등
- 어린이보호구역 단속
 - 신학기 및 등·하교 시간대 집중단속
 - 개학기에 특별 집중단속기간(3월, 9월) 운영
 - 등·하교 시간대(08:00~09:00, 12:00~16:00)에 집중 단속
 -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차량 과태료 가중 부과 확행
 - ※ 승용차 4만원→8만원, 승합차 등 5만원→9만원
 - (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참조)
- 자전거도로 단속
 - 행락철(4월~5월, 9월~10월) 및 공휴일 특별단속 실시
 -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취약구간, 상시 집중단속
- 학원주변 학원통학버스 불법 주·정차 특별단속

- 관내 학원주변 도로에 학원버스 일렬주차로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민원발생

-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시행, 필요시 경찰 협조요청

- **특별 단속구역**

-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대형 행사장 주변, 보행전용거리 주변 등

- 소방도로, 기타 차량통행 확보를 위해 단속이 필요한 지역

- 단속 필요시 시간, 범위 등을 정하여 특별단속구역 지정

- **시민신고제에 의한 주말, 공휴일 불법 주·정차 단속**

- 신고대상 지역 : 보도, 횡단보도, 교차로,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변

- ※ 교차로 :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나 교차하는 부분(주택가 이면도로 제외)

- ※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변 : 안전행정부 앱을 통한 신고시만 적용

- 신고대상 시간 : 07:00 ~ 22:00 (주말,공휴일 포함)

- 신고방법 : 인터넷, 스마트폰 앱신고, 우편 및 방문 신고

- 첨부(제출)자료 :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이상 첨부

- ※ 단, 보도위, 횡단보도, 교차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정지상태 확인이 가능한 1분이상 시차가 있는 사진 2매 또는 영상자료로 과태료 단속 처리

■ 단속 완화 지역 관리

- **단속 완화 대상**

- 전통시장 주변

- 화물조업(택배)장소

- 장애인 차량(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)

- 소규모음식점 점심시간대(6차로 미만 도로변, 11:30~14:00)

- **단속 관리 방법**

- 순찰을 강화하여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도위주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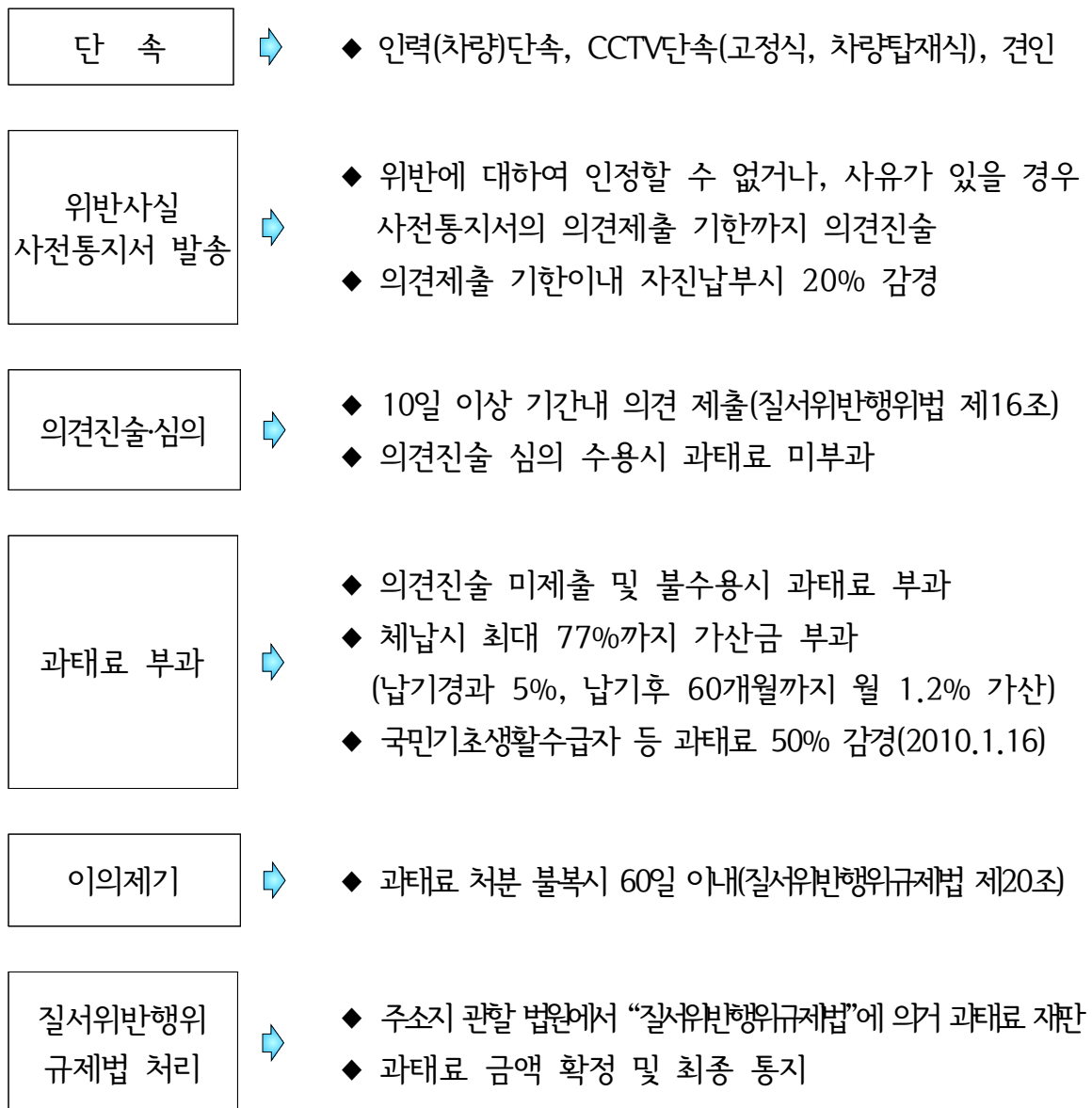
- 단, 보도, 교차로, 횡단보도, 버스정류장, 어린이보호구역, 이열주차 등은

완화구간이라도 엄격하게 단속

- 기타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단속조치

IV 단속 절차

■ 단속업무 흐름도



V 단속방법(단속 수단별 단속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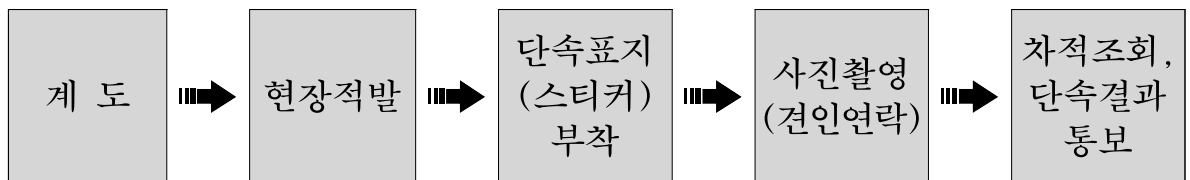
■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자격
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
 - ※ 공익근무요원, 견인업체 등 단속시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는 단속권한 없음
- 단속시 제복착용(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)

■ 단속 수단별 단속기준

● 인력·차량단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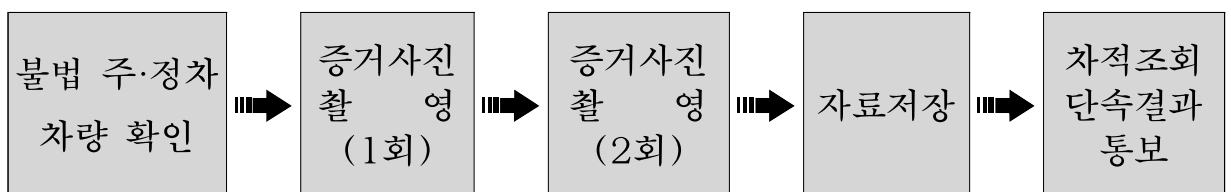
<단속절차>



- 단속표지 사용 및 서손처리의 명확화
 - 단속표지(스티커)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부여, 2종류 단속표지를 제작·사용 (“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”[\[별지2\]](#), “과태료부과대상차량”[\[별지3\]](#))
 - 단속표지 서손처리시 원본을 회수하여 보관하고,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결재 후 서손 처리

● CCTV단속(고정식[별표 2](#), 차량탑재식)

<단속절차>



< 단속방법 >

【 고정식 CCTV 】

- 운영시간 : 07:00 ~ 22:00
- 적발방법 : 최초단속 후 5분 경과시 단속
 - ▷ 최초단속(3회 촬영) : 최초차량, 최초 번호판, 최초배경사진
 - ▷ 단속완료(3회 촬영) : 최종차량, 최종 번호판, 최종배경사진

【 탑재형 차량 CCTV 】

- 운영시간 : 07:00 ~ 22:00
- 적발방법 : 최초단속 후 5분 경과시 단속
 - ▷ 단속시간(2회 촬영) : 최초차량, 최초번호판사진
 - ▷ 단속완료(2회 촬영) : 최종차량, 최종배경사진
- ※ 번호판 가림, 단속 사각지대 주차 등 고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
인력단속 병행 실시

■ 견인 단속기준

- 중점단속구역 불법 주·정차 차량 : 견인 병행
 - ※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체 연락 조치
- 일반 및 특별단속구역 불법 주·정차 차량 : 필요시 견인조치
- 단속완화 대상 및 지역 : 계도위주 관리, 견인자제

☞ 견인우선대상 차량

- ▷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·정차 차량
- ▷ 횡단보도, 교차로(100m아내),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·정차 차량
- ▷ 어린이(노인)보호구역, 자전거도로,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·정차한 차량
- ▷ 보도(인도)를 2/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·정차 차량
- ▷ 버스(마을버스)정류소, 택시 승강장 내에 불법 주·정차한 차량

VI 단속순서

■ 동일지역에서의 단속

- 교통량이 많은 도로 순으로 단속
- 대로부터 소로로 단속
- 중점단속구역 → 특별단속구역 → 일반단속구역 순으로 단속
- 사회적 약자(장애인, 생계형 차량)에 대하여 후순위 단속
※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
■ 동일 단속구역의 다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

- 이열주차 및 대각선 주차 등 도로를 2개차로 이상 점령하여 현저하게 교통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, 방해하는 경우
- 인도, 횡단보도, 버스정류소, 도로모퉁이, 교차로, 자전거도로 등 소통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
⇒ 불법 주·정차 차량의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
(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)

■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

- 단속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

- 응답소교통불편신고에 준하여 민원인의 인적사항, 민원내용을 분명히 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(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)
- 다수민원 신청에 의한 경우
 - 일정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, 계도 및 단속 전·후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

VII 단속반 편성·운영

■ 단속반 편성

- 근무조 편성 : 주차단속 공무원을 2인 1조로 편성 운영
 - 원활한 단속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자로 활용
- 보고체계 확립
 - 주차단속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시 보고체계 확립
 - 주차단속원의 근무중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한 상시 연락체계 유지
 - 단속 근무조 중 선임자(단속조장 등)를 선정하여 책임 단속 실시

■ 단속원 운영

- 직무 및 친절교육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)
 - 법정교육과는 별도로 단속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무, 친절교육 및 수시교육 실시
 - 근무조별 근무일지(차량운행일지 포함) 작성
- 근무자, 단속지역, 적발차량에 관한 사항 등
- 단속원에 대한 사기양양

- 직무능력을 향상하고, 대민업무의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단속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 강구(표창 및 단속포상금 지급 등)
-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

VIII 의견진술, 과태료 업무 등 처리기준

■ 주·정차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업무 처리기준

- 주·정차위반 사전통지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)
 - 불법 주정차 단속후 10일 이내 사전통지서 발송 준수(자진납부기간 20일)
 - 발송방법 : 등기우편
 - 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[별자4,5]
 - 사전통지서 반송분, 렌트카, 리스차량 등 실제 차량운행자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기간(10일) 재부여 가능
-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
 - 처리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·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
 - 사안별 세부처리기준[별표 3,4,5]
 - ※ 다만, 세부처리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연 3회 이상 동일사안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 -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운영으로 주·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

■ 주·정차위반 과태료 업무 처리기준

- 주·정차위반 과태료 감경
 -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% 경감

▷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후 부과결정 후에도 자진납부기간내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경 가능(법무부 유권해석 '09.9.16)

※ 납부지연시 최대 77%까지 가산금 부과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(과태료 금액의 50%)
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)

< 감경대상자 >

- 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- 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- 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▷ 미성년자(만14세~만19세)

-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**한하여 감경 가능**
-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**감경 불가**
- 감경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

- ▷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 받고,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,
- ▷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기한 종료후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됨

·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

- ▷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
 -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% 감경한 2만원(4만원×0.5)
 - 추가적으로 20% 자진납부 감경(2만원×0.2=4천원)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원을 의견제출기간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 종료

IX 향후계획

■ 상습 불법 주·정차 구역내 무인단속시스템(CCTV) 설치

- 설치대수 : 3개소(1개소당 주 카메라1, 감시카메라2, 전광판, 스피커)
- 설치장소 : 상습 불법 주·정차 구역 중 취약지역 선정
- 소요예산 : 120,000천원
- 2015년 2월 중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

■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·주차단속겸용 CCTV 설치(교통행정과)

- 설치대수 : 21개소(유치원 15개, 어린이집 6개)
- 설치장소 : 어린이보호구역내 정·후문
- 소요예산 : 462,000천원(전액시·국비, 7:3)
- 2015년 7월~8월 중 설치예정

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주민 홍보 및 구·동 합동 캠페인 실시

- 보도위 불법 주·정차 단속 강화 홍보
 - 성북소리, 성북신문 등 보도위 불법 주·정차 단속강화 안내 및 홍보
 - 동 직능단체 회의, 통·반장 교육시 주민 안내
-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
 - 구·동 합동 캠페인 실시
 - 2015년 3/4분기 시행예정,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

■ 불법 주·정차 단속 스티커 및 계도장 제작

- 기존 스티커 및 계도장 소진시
 - 불법 주·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안 : [별지2, 3]
 - 불법 주·정차 단속 안내문 겸 계도장 : [별지1]

X 행정사항

■ 지역주민 대상 홍보

- 성북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
 - 지역별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면제기준
- 전 부서로 同 단속계획 전파
 - 직능단체 및 통장회의자료 활용

■ 서울시, 안전행정부로부터 추가계획 시달 시 보완추진

- 붙임 1. 어린이(노인)보호구역 현황 1부
2. 자전거도로 현황 1부
 3. 전통재래시장 현황 1부
 4. 1.5톤이하 화물차량 주차허용 구간 1부
 5. [별표1~5]
 6. [별지1~5]. 끝.